

2003. 10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김 제 시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3. 10.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의 안	2003-56
번 호	

1. 개정이유

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관련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.5로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세법제196조의17제2항, 동법시행령제146조의14.

나. 예산조치 : 부

다. 협의 등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부

3) 입법예고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3제1항중 “1,000분의 120” 을 “1,000분의 149.5”으로 한다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- 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40조의3(세율)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<u>1,000분의 120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0조의3(세율) ①----- -----<u>1,000</u> 분의 <u>149.5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